

기부금단체용



「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」 시범운영 안내

안녕하십니까?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국세청 홈택스에 「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」을 구축하여 '21.4.1.부터 6.30.까지 시범운영 후 '21.7.1.부터 정식개통할 예정으로 제도 소개, 시범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

본 제도 신설로 **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**,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**시범운영에 참여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도개요

- 기부금단체가 '21.1.1.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(의무 발급사항은 아님)

시범운영

- 시범운영 대상 : 기부금단체*와 기부자
*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(발급권한 개별신청 가능)
발급권한 개별신청 방법 : 홈택스 “자주찾는 메뉴” 또는 “My홈택스”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화면 >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
- 시범운영 기간 : '21.4.1. ~ 6.30
- 자료수록 여부 :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(저장 또는 삭제) 여부를 선택가능하고,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합니다.
※ 단,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·보관·제출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.
('21.7.1.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면제됩니다.('20.12.22.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4 등 개정)

발급방법

-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.

도입효과

- (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)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로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(소득세·법인세 신고증빙으로 활용 가능)합니다.
- (법정서식 제출편의)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·보관·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

신청문의

윗면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전화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번 (평일 9:00~18:00)

2021년 4월

세무서장 (직인생략)



그동안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**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(구 '지정기부금단체')으로 인정**되므로 **기재부에서 지정·고시된 이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**

**신규
신청**

- 2018. 2. 13. 전에 인·허가 받은 **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·문화예술·환경보호운동단체**

**재지정
신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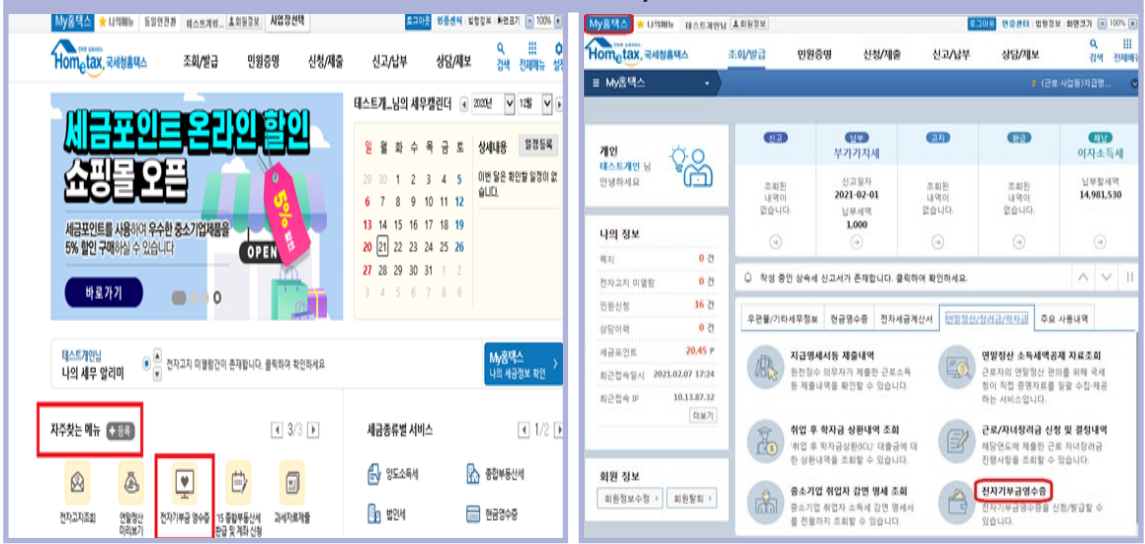
- 2018. 2. 13. 전에 (구)법인세법 시행규칙 **별표6의2**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

- 2018. 1. 1. 전에 (구)법인세법 시행규칙 **별표6의7**로 지정됐던 단체 중 **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**

전자기부금
영수증
발급시스템
접근방법

- (홈택스 로그인) 아이디,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
- 시스템 접근경로
 - ① 홈택스 “자주찾는 메뉴”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화면
 - ② 홈택스 “My홈택스”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화면
 - ③ 홈택스 상단메뉴 조회/발급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화면

자주찾는 메뉴 및 My홈택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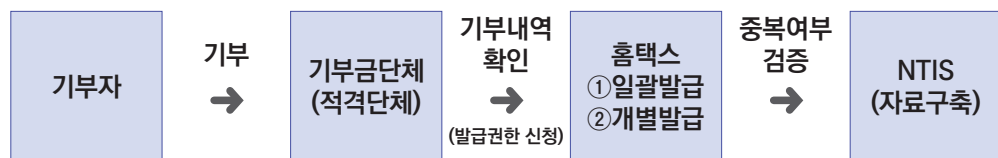


전자기부금
영수증
발급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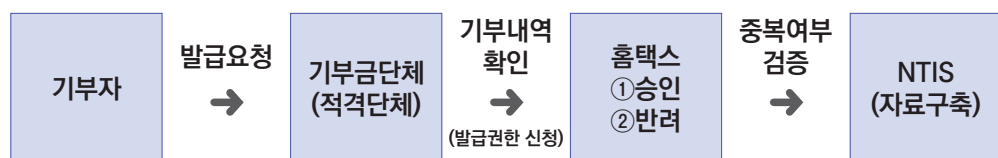
- ① (일괄발급)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(엑셀파일)를 변환하거나,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·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② (개별발급) 건별로 기부자,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③ (미발급시)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

〈 일반적인 경우 : 기부금단체 발급 〉



〈 기부금단체 미발급 : 기부자가 발급 요청 〉



※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> 국세정책/제도 > 「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